

<p>전국단위로 미술장식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 본문중 “영 제25조제2호”를 “영 별표1 의2제1호”로 한다.</p> <p>제22조 앞에 “제6장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”를 삽입한다.</p> <p>제22조제1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. 미술장식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8. 미술장식품 가격의 적정성 9. 기타 미술장식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<p>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36조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12조”를 “제11조제1항·제12조 및 제23조의2”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, 공모를 통한 제작·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 관리업무 4.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보존 관리업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기금지원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 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.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.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p>제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</p>	<p>전국단위로 미술장식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 본문중 “영 제25조제2호”를 “영 별표1 의2제1호”로 한다.</p> <p>제22조 앞에 “제6장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”를 삽입한다.</p> <p>제22조제1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. 미술장식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8. 미술장식품 가격의 적정성 9. 기타 미술장식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<p>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36조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12조”를 “제11조제1항·제12조 및 제23조의2”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, 공모를 통한 제작·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 관리업무 4.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보존 관리업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기금지원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 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.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.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p>제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</p>
---	---

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 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	(3) 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하고, 정관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을 승인신청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 록 함.(안 제5조)
부 칙		(4)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 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 도록 하며,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.(안 제6조 및 제9조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(5)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합하며, 감사는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도록 함.(안 제8조)
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		(6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의안 번호	920	2001년 9월 일 보건사회위원회
1. 심사경과		(7) 재단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15조제1항)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		(8) 재단은 매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 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 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(안 제15 조제2항)
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		(9) 여성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6조)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(2001년 9월 10일 상정·의결)		(10)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또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2. 제안설명의 요지		(11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8조)
(제안설명자 : 여성정책관 김애량)		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안석수)
가. 제정이유		가. 개요
실질적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 상,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 업을 수행하고, 2002년 개관예정인 「서울 여성플라자」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재 단법인서울여성」을 설립·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여성정책 활성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.		○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 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 하고, 2002년 개관예정인 「서울여성플라 자」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것임.
나. 주요골자		나. 검토사항
(1)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.(안 제3조)		(1) 상임이사 임명(안 제9조제2항)
가) 서울여성플라자(동작구 대방동 345 소 재) 운영 및 관리		○ 안 제8조에 의하여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 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합하 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 제9조제2항에 의
나)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		
다)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		
라)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		
마)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		
바)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		
사)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		
아) 여성관련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		
자)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		
차)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		
(2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. (안 제4조)		